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2020. 8.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의안 번호	557
----------	-----

제출일자 : 2020. 8. 14.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강관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대책사업으로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강관 기술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 공 시 기	소 재 지	부지	건축 연면적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강관기술센터	'20. 6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벨리동로 178	7,583㎡	2,725㎡

②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출연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 공 시 기	소 재 지	건 축 연면적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20. 10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2,995㎡

③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 목 적 :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복합 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 지원
- 사용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출연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5년간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준 공 시 기	소 재 지	건 축 연면적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20. 12월	경산시 4일반산업단지	2,509㎡

④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용료 감면

- 목 적 : 2020년 2월 수탁기관인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사용기관 :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 ~ 위탁종료시(2023. 1월) ※재위탁시 기간 연장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사 업 명	건 물 명	이 전 시 기	소 재 지	부 지	건 축 연면적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 기관 사무실 이전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 8월	안동시 신안동 290-3	320.96㎡	555.3㎡

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교량설치 등)소재 사용료 감면

- 목 적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역
- 사용기관 :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용기간 : 2020. 허가일로부터 5년간(※ 갱신 가능)
- 사용방법 : 무상
- 사용대상

토지소재지	지 목		전체지적/ 매각(용도폐지) 지적(㎡)	공시지가 (천원)	대장가격 (천원)
	공부	현황			
합 계			481 / 481		15,825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972-9	답	잡종지	240 / 240	33	7,896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972-20	답	잡종지	241 / 241	33	7,929

3. 관련법령

【공유재산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